

##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개정 협회 의견

개정안	협회 의견	사유
<p><b>제98조2(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)</b></p> <p>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소규모 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2층이상 10층미만의 건설공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</li> <li>2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설공사</li> <li>3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건설공사</li> <li>4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의 건설공사</li> </ol>	<p><b>제98조2(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)</b></p> <p>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소규모 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2층이상 10층미만의 건설공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</li> <li>2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설공사</li> <li>3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건설공사</li> <li>4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의 건설공사</li> </ol>	<p>(1)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놀이시설, 골프연습장, 주차타워 등 높이가 큰 시설물은 공사 중 고소작업에 의한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면적과 함께 높이를 기준으로 대상 시설물을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</p>